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 경제영역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	배포일시	2017. 3. 30(목) 총 2매	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 당 자	- 과장 엄정희, 사무관 최종화, 사무관 이경민 ☎ 044-201-3761, 3765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위한 ‘건축법’ 개정안 국회 통과

- 건축물 인·허가, 사용승인 시 건축사, 기술사가 서류 검토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「건축법」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지자체 별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립

- 현재 인허가,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 절차 수행 시 지자체 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나 인력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므로,
- 향후 지자체 별로 ‘지역건축안전센터’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,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, 구조계산서,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·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
- 또한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‘건축안전특별회계’를 설립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.

② 건축협정 가능구역 확대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 도입

-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‘도시재생활성화 지역’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,
- 또한,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. 다만, 지역건축안전 센터와 관련 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.

- 이번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, 시공, 감리 전반에 대한 허가권자의 전문적 관리·감독 체계 확보로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종화 사무관(☎ 044-201-3761), 이경민 사무관(☎ 044-201-37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